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0. 17
운 영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8월 8일 영
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4년 8월 31일 운
영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1994년 10월 17일
제28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尹鼎重)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4327
호) 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
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장애와 상해기준(안 제5조)
○보상금청구 및 지급결정(안 제6조 및 제7
조)
○보상심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9조 및 제10
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兪載漢)

'94. 3.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32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
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보상금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
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을
참조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56
----------	-----

제출년월일 : '94.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공포(1994. 7. 6 대
통령령 제14327호)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장애와 상해기준(안 제5조)
다. 보상금 청구 및 지급결정(안 제6조 및 제7
조)
라. 보상 심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9조 및 제10
조)

3.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
조의2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9조제45조, 공무원상재해
인정기준(91. 6. 21 총무처 훈령 제15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의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
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
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회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 3 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 4 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 5 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6 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8 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 9 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구청 관련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등포구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접 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5일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전 화 번 호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 용 기 관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 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

직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			처 리 기 간
					즉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